

## 귀하의 권리 알기

### 재향군인 보호권

#### OFCCP는 재향군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은 1974년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정비 지원법의 적극적 조치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때때로 VEVRAA로 불리는 이 법은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고용주들이 보호받는 퇴역 군인들을 모집, 고용 및 홍보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고용, 해고, 급여, 복리후생, 직무 할당, 승진, 정리해고, 훈련 및 기타 고용 관련 활동에 대한 고용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회사들이 보호받는 퇴역 군인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1. 보호받는 퇴역군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고용 차별이란 무엇인가?

Employment discrimination based on your status as a protected veteran generally occurs when

보호 참전용사로서의 지위에 따른 고용 차별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VEVRAA에 따라 보장되는 보호 참전용사 범주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이나 취업 지원자로 당신을 불리하게 대할 때 발생합니다.

#### 2. VEVRAA 하에서 "보호받는 재향군인"은 누구입니까?

아래에 설명된 재향군인 범주 중 하나에 속할 경우 VEVRAA에 따라 "보호받는 재향군인"입니다.

- 상이군인  
보훈처장이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현역 복무 중 장애보상금(또는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을 받거나 복무 관련 장애로 인해 전역 또는 전역한 참전용사.
- 그 밖에 보호받는 재향군인  
전쟁 중 미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거나, 국방부가 관리하는 법에 따라 캠페인 배지 승인을 받은 전역 또는 원정 지역에서 복무한 재향군인.

- 최근에 소집이 해제되었거나 퇴역한 재향군인  
최근 3년 이내에 제대하거나 현역에서 소집해제된 재향군인

- 군 복무 훈장을 받은 재향군인  
미군에서 현역 복무 중 미군 작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재향군인.

2003년 12월 이전에 체결된 일부 연방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의 경우, VEVRAA에 따른 보호 퇴역군인의 범주가 약간 상이합니다. 만약 귀하의 군복무 내용에 따라,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통해 OFCCP에 연락해야 합니다.

#### 3. OFCCP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OFCCP는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회사의 직원 및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정보기술 회사, 육류 포장 공장, 소매점, 제조 공장, 회계 회사, 건설 회사 등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 4.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 나는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

VEVRAA 하에서 보호받는 재향군인으로서 귀하께서는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습니다. 귀하께서는 재향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용을 거부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강등당하거나, 해고되거나, 급여를 적게 받거나, 적대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원이고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이라면 귀하께서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는 귀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200 CONSTITUTION AVENUE NW | WASHINGTON, DC 20210 | 전화: 1-800-397-6251 | 전보(TTY): 1-877-889-5627 | [www.dol.gov/ofccp](http://www.dol.gov/ofccp)



200 CONSTITUTION AVENUE NW | WASHINGTON, DC 20210 | 전화: 1-800-397-6251 | 전보(TTY): 1-877-889-5627 | [www.dol.gov/ofccp](http://www.dol.gov/ofccp)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로 하여금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는 고용주가 꼭 제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귀하께서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이라면, 고용주는 귀하께서 그 일에 지원하고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비싸지 않다면 합리적인 숙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 5. "정당한 편의"란 무엇인가요?

"정당한 편의"는 장애가 있는 지원자 또는 직원이 성공적으로 그 직무에 지원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용의 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직무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또는 변경 사항을 뜻합니다. 정당한 편의는 필수적인 업무의 기능을 바꾸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이 그러한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봐줘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효과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경사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dol.gov/ofccp/posters/ReasonableAccommodationPocketCard/index.ht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6. 채용 과정에서 그리고 추후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의 예는 무엇입니까?

정당한 편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큰 인쇄물, 점자 또는 녹음테이프와 같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필기 자료를 제공

- 작업 일정 조정 또는 변경

-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나 수화 통역사를 제공

- 채용, 면접, 시험 및 지원 상의 단계들을 장애가 있는 지원자나 직원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직원 회의 개최

- 장비 및 장치의 제공 또는 변경

- 정책 및 절차 조정 또는 변경

-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업 환경 변경

### 취업 기회 찾기

### 7.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서비스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퇴역 군인의 취업이나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 계획, 구직 자원, 훈련, 채용 중인 고용주에게 추천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재향군인에게 제공해주는 지역 고용 서비스 사무소 또는 미국 일자리 센터. 가까운 지역의 고용 서비스 사무실이나 미국 일자리 센터의 위치는 <http://www.careeronestop.org/localhelp/local-help.aspx>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후원합니다.
2. 국가 자원 디렉토리 (National Resource Directory, NRD)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특별히 재향군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단체와 연결해주는 웹 사이트입니다. NRD는 고용 기회, 혜택 정보 및 교육 및 훈련 기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노동부는 국방부, 재향군인회, 군대와 협력하여 이 웹사이트를 후원합니다. NRD를 찾아보시려면 <https://www.nationalresourcedirectory.gov/>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8. VEVRAA는 연방 하청업체로하여금 보호받는 재향군인을 모집할 수 있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까?

연방 하청업체는 보호 대상 재향군인이 구직에 대한 우선적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고용 서비스 사무소 또는 미국 일자리 센터에 구인 공고를 먼저 내야 합니다. 모든 주는 고용주가 구직 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취업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구직공고를 찾아보시려면 <http://careeronestop.org/>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재향군인회 단체와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 9. 보호받는 재향군인은 채용 시 우대를 받습니까?

연방정부는 보통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 및 특정 기간 동안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거나 군복무를 한 재향군인들에게 정부 일자리 공고가 났을 때, 고용 특혜를 부여합니다.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자를 포함한 개인 고용주들에게는 재향군인에 대한 고용 특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향군인우선법은 재향군인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승진, 이직, 업무 재할당, 복직과 같은 내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하여 재향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 10. 고용주가 내가 군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낮은 급여나 봉급을 줄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고용주는 귀하께서 군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를 줄이거나 적게 줄 수 없습니다.

### 불만 사항 제기하기

### 11. 보호 대상 재향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용주가 저를 차별했다고 믿는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께서는 OFCCP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연방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 12. OFCCP에 어떻게 불만을 제기합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OFCCP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양식 작성 및 제출

- OFCCP 사무소에서 직접 양식 작성 또는

-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OFCCP 지역 사무소로 작성된 양식을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냅니다.

이 양식은 <http://www.dol.gov/ofccp/regs/compliance/pdf/pdfstart.htm>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모든 OFCCP 사무소에서 종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으려면, <http://www.dol.gov/ofccp/contacts/ofnaton2.htm>에 접속하여 OFCCP 사무실의 온라인 목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 작성하고 나서는 꼭 서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OFCCP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는 하나 OFCCP 조사관이 추후 면담 과정에서 양식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보호 대상 재향군인 신분에서 다른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별이 이뤄진 날부터 30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재향군인고용훈련원이나 현지 고용서비스청이나 미국 일자리 센터에 있는 현지 재향군인고용대표부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불만 사항들은 OFCCP로 이관될 것입니다.

### 13. 내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을 빌미로 고용주가 나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키거나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고용주가 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이에 대해 보복 행위를 일삼는 것은 불법입니다. OFCCP는 규정을 통해 귀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괴롭힘, 협박, 위협, 강요 또는 보복의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귀하를 보호합니다.

### 14. 만약 내가 고용 차별의 피해자였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받아 마땅한 지위나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용, 승진, 복직 또는 업무의 재할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밀린 급여, 초기 급여, 임금 인상 또는 이러한 구제책을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OFCCP에서 연방 하청업체 또는 하도급자가 VEVRA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OFCCP는 회사를 향후 연방 계약 대상이 되지 못하게끔 금하거나 제외시키거나 회사의 현재 계약이 취소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미국 노동부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

1-800-397-6251

전화(TTY): 1-877-889-5627

[www.dol.gov/ofccp](http://www.dol.gov/ofccp)

이 팩트 시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제 법률 및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